

INNOPAY 서비스 이용신청서

1. 사업자정보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필수기재항목"입니다.)

상 호 명		사 업 체 구 분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명		대 표 자 휴 대 폰 번 호	
업 태		종 목	
주 소	()		

2. 가맹점정보 (홈페이지는 카드 심사시 꼭 필요한 사안으로 기재 바라며, 없을 시 당사에 고지바랍니다.)

가 맹 점 아 이 디	지정부여		그 루 아 이 디	지정부여	
주 요 판 매 상 품			홈페이지 주 소		
대 표 유 선 전 화			팩 스 번 호		
담 당 구 분	이 름	부서/직위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이메일(E-Mail)
서 비 스 책 임 자		/			
회계(정산담당자)					

3. 정산계좌정보 (예금주는 대표자(신청법인)와 동일 해야합니다. / 꼭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세 금 계 산 서 이 메 일
			@

4. 서비스 이용조건(부가세별도) (원하시는 서비스를 '체크'해주세요. / 꼭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신 용 카 드	ISP/안심클릭	% (카드사인증)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통합간편결제	% (영중소 우대 미적용)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ARS안심결제	% (카+유+생+비) / (카+유)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수 기 결 제	% (카+유)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자동결제	% (카+유+생+비)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SMS 수기결제	% (카+유+생+비)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SMS 인증결제	% (카드사 인증)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IC결제 / 키오스크	% (카+유)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계 좌 이 체	수 수 료	% (최저: 200원/거래건)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가 상 계 좌	수 수 료	건당 원 (환불시 300원/거래건)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SMSG상계좌	수 수 료	건당 원 (환불시 300원/거래건)	정산주기	<input type="checkbox"/> D+ (은행영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월	회 정산
<input type="checkbox"/>	페 이 링 크	신청 시 ARS안심결제, 수기결제, ISP/안심클릭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월 기본료가 발생됨					

- **계좌이체/계좌간편결제/가상계좌 취소(환불) 시 수수료 미 반환, 가상계좌 환불 기능 사용시 환불 수수료가 추가로 청구됨.**

5. 기타 (부가세별도) (꼭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초 기 비 용	초기등록비 (초기세팅비, 개발비 포함)	보 증 보 험	월 정 산 한 도	비 고
	원	만원	만원	
월 기 본 료	<input type="checkbox"/> ()원 / 월 (회선)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 월 (회선 무제한)		*ARS안심결제, SMS결제, SMS가상계좌, 페이링크 사용시 월 기본료는 필수 납부해야 함
초기등록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 140-009-472043 예금주 : ㈜인피니소프트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요망)			

※ 기본료는 INNOPAY App 유지보수, ARS 결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SMS발송비, ARS접속 회선 기본료, 가상ARS번호 기본료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제1조[목적] 본계약은 "고객사"와 "인피니소프트" 간에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용계약약관과 별도로 이용수수료 및 기타비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범위] 본계약서의 범위는 "고객사"가 "인피니소프트"에게 지불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료로 한정하고 기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은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용계약약관"을 준용한다.

제3조[계약의효력] 본계약은 "가맹점아이디"가 부여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이용료] "고객사"는 "인피니소프트"가 제공하는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료로 [4.서비스 이용조건, 5.기타]의 수수료를 "인피니소프트"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가맹점은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이용약관"을 수령함과 동시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용신청서상 기재된 사항 및 약관내용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고객사", "회사" 각각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이용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자 필 기 재 :

수령함

2.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이용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자 필 기 재 :

들었음

20__년 __월 __일 (자필로 계약일자 기재 필수)

"고객사" (꼭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 (인)

"고객사" 항목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후 인감날인 필수

"회사"

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

사업자등록번호 119-86-46658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10층 (가산동, IT캐슬2차)

대표이사 황 인 철 (인)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계약 이용약관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이하 “INNOPAY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약관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INNOPAY서비스”를 “고객사”가 이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INNOPAY서비스”라 함은 “고객사”가 인터넷 쇼핑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 등(이하 “결제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매입, 입금, 정산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자”라 함은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고객사”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INNOPAY서비스”를 이용하여 동 구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INNOPAY서비스”를 “고객사”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고객사”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거래승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한 접근매체의 이상유무를 “고객사”가 “회사”에게 요청하고, “회사”는 동 접근매체를 “결제기관 등”으로 전송하여 거래의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매입”이라 함은 거래의 승인 후 거래정보를 “결제기관등”에게 전송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정산”이라 함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입 대금에서 “회사”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정보, 소액지불정보, 은행계좌정보 등 이용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 3 조 (책임 및 의무)

- “고객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기관 등”의 이용대금 청구서 또는 매출전표 등에서 “회사” 또는 “결제기관 등”의 명목이 사용되나 재화 및 용역의 판매자는 “고객사”라는 점과 재화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고객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등과 같이 관련 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로 인한 “결제기관 등”의 부도 거래 발생 시 “고객사”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고객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으며, 계속 거래 혹은 특수한 유형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 및 이용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객사”는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산 배송일 기준 3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회사”에 즉시 유선 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 “고객사”는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불법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비정상거래”, “이용자”의 본인사용, 신용카드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고객사”는 “INNOPAY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고객사”는 “결제기관 등”의 수수료 변경 등, “결제기관 등”과의 계약 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예외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고객사”는 “INNOPAY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제기관 등”을 중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고객사”가 가상계좌 환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가 전달한 “이용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환불을 대행하고, “고객사”는 환불 수수료 (300원/건)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환불을 완료한 이후에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한 문제, 오송금 등 “고객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사”는 “회사”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 “회사”는 “고객사” 및 “고객사”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INNOPAY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고객사”의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원활히 “고객사”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INNOPAY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는 “INNOPAY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고객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하여야 한다.
 -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 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다만, “회사”는 전항 제6호에 의하여 “고객사”가 부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의무가 면제된다).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및 기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단)

- “회사”가 제공하는 “INNOPAY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사” 또는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서비스 중단 1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고객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3개월) 재화 및 용역의 매출이 없거나, 본 계약상의 제7조(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따라 고객사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INNOPAY서비스” 이용 수수료(초기등록비, 월 기본료, 월 사용료 포함)를 일정 기간(납부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 조 (소프트웨어 설치)

- “회사”는 “INNOPAY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물 또는 시스템과 “INNOPAY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고객사”에게 제공한다.
- “INNOPAY서비스”와 “고객사”의 쇼핑물 또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샘플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고객사”가 수행하며, “회사”는 “고객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고객사”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제한)

- “회사”가 본 계약에서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INNOPAY서비스”는 “고객사”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하며, 직접 판매와는 무관하게 금전유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고객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거나 “고객사”가 직접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고객사”가 전 항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정산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회사”가 제휴한 “결제기관 등”의 회원, 은행계좌의 보유자, 이동통신가입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 “고객사”의 판매 재화 및 용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고객사”가 “회사”에게 서면으로 고지, 설명한 재화 및 용역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체결 전 또는 체결 후라도 “고객사”가 판매하는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이 “회사” 또는 “결제기관 등”이 지정된 [카드사 지정 입점불가 업종] 또는 [카드사 지정 유의업종]에 속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영업일 경우, 향후 “이용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객사”의 문제, 법률조항의 변경 등으로 향후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INNOPAY서비스”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등)

- “고객사”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INNOPAY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INNOPAY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고객사”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회사”에게 [INNOPAY신청서]에서 정한 초기등록비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초기등록비는 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 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객사”는 [INNOPAY신청서]에서 정한 월 기본료를 매월 결제일(서비스 개시일)에 선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만일 지급일이 경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최고한도 이율 내의 금리로 일할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 기본료는 판매자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INNOPAY App의 사용자 수 또는 ARS결제 동시접속 사용자수의 증감 시 변경될 수 있다.

제 8 조 (거래승인)

- 거래승인은 “결제기관 등”이 접근매체 정보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고객사”의 책임으로 한다.
-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정보는 “회사”의 사전 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고객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가 제공한 접근매체 정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이용대금잔액, 도난, 분실신고 등 신용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고객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9 조 (매입)

- 본 계약에서 매입대상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에 한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매입방식에 따라 “결제기관 등”에게 매입을 위탁하거나 전송한다. 단, “고객사”가 선택한 매입방식이 수동 또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입 청구의 지체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 “회사”는 “고객사”의 매입 요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결제기관 등”에게 매입을 요청하여

야 한다.

- ③ "회사"는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입 결과 내역을 "고객사"에게 제공한다.

제 10 조 (정산)

- ① "회사"는 "INNOPAY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된 정산대금을 본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 후, 본 계약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고객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입 있는 경우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 ③ "회사"는 정산 완료 후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거래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고객사"의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당월 "INNOPAY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고객사"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INNOPAY신청서]에서 정한 초기등록비와 월 기본료를 "고객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정산은 "회사"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회사"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된다.
- ⑦ 대금의 정산은 "고객사"의 월 승인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정산한도 또는 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담보 제공 시 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1 조 (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공)

- ① "고객사" 및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거래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고객사"는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회사"가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유선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사" 및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전 각항과 별도로, "회사"는 "INNOPAY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고객사"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에 동의한다.

제 12 조 (책임의 귀속)

- ① "고객사"의 거래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동 거래 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거래로 간주하여 "고객사"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다.
 1. "고객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이용하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단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이용하는 의의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본인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포함)이나 배송지연 및 계약불이행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고객사"가 거래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4. "고객사"가 담보제공 및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객사"의 거래금액 또는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가 또는 감소 및 "이용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한다.
 6. 제3자로부터 "고객사"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7.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고객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이용자"의 취소/환불 등의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 ②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고객사"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고객사"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INNOPAY서비스"의 이용 중단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회사"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고객사"가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회사"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3. 할부 거래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행형 또는 "결제기관 등"의 거래 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4. "고객사"와 "회사"가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 ④ 제1항 7호의 지급보류의 경우, 보류 3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고객사"에게 분할 지급한다. 단,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계속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소 일시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 ①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제기를 한 경우 "고객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확인되는 경우 "고객사"에 대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고객사"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의 본인 미사용 및 계약 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 등의 이의제기 발생시,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고객사"가 본 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회사"는 "고객사"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④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원활히 해결하지 않아 INNOPAY 서비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고객사"가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고객사"는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서비스이행여부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요구일로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14 조 (담보 제공)

- ① "고객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 할 경우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객사"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금액은 "고객사"의 거래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민원 등 "회사"가 "고객사"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담보설정금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단, 본 계약의 제3조(책임 및 의무) 1항에 따라 "고객사"가 재화 및 용역 또는 서비스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담보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본 계약기간 중 "INNOPAY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사"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회사"는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5. 본 계약에 따른 취소, 환불, 차지백, 매출부인, 민원, 분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고객사"의 정산금 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원인이 된 거래의 승인 또는 결제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는 본 계약에 따른 정산금 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뿐만 아니라 회사와 "고객사" 간 체결된 개별계약, 부속계약 또는 부가서비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료, 월 기본료, PG수수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위약금 기타 일체의 금전지급의무가 포함되며, "고객사"는 위 채무가 본 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의 담보대상 채무에 포함됨에 동의한다.
- ② "회사"는 "고객사"가 제공한 전 1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고객사"의 신용카드 거래의 취급한도(월/일 승인한도 및 정산한도)를 설정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객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담보의 제공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고객사"가 본조 1항에 따라 "회사"에 제공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를 갱신 또는 증액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정산대금 지급보류금액에 대해서도 "고객사"는 "회사"에게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 (또는 "PG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회사"가 "고객사"에게 발행하는 것에 대해 "고객사"는 이에 동의한다.

제 15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본 계약에서 계약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고객사"와 "회사"의 서면합의에 의하며 변경될 수 있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회사"에게 변경권이 주어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회사"의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 통보가 "고객사"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3.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제공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 ② "고객사" 및 "회사"는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10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고객사"는 "INNOPAY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 이후 발생하는 거래의 취소, 이의제기 등의 처리방안을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고객사" 및 "회사"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을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채납처분,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

압류, 기타 보전처분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3. "회사"와 "결제기관 등" 간의 계약이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종료되어 "회사"가 더 이상 본 계약 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4.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5. 계약 당사자 상호간 정산해야 할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연체할 경우
 - 6. "고객사"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이용자가 "회사" 또는 "결제기관 등"에게 월 3회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 7.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사"가 임의로 재화 및 용역을 변동한 경우
- ⑤ 전항의 사유로 "회사"가 계약 해지 시, "회사"는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⑥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 이행)

- ①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라 고객확인, 실제소유자 확인,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1. 고객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정보 및 증빙자료
 - 2. 거래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한 정보
 - 3. 거래내역 및 자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
 - 4. 기타 특정금융정보법 등에서 요구되는 사항
- ③ "고객사"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정보가 허위·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의 승인 유보, 거래 제한, 정산대금 지급 보류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객사"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 제한, 거래 중단 또는 정산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한다.
- 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 18 조 (부속계약 체결)

"회사"와 "고객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결제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의 제공, "고객사"의 요청에 의한 개발 사항 발생 시 별도의 부속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

제 19 조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들은 "회사"의 약관 또는 관련법규 및 상관례를 따른다.
- ②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고객사" 또는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의 경우에도 "고객사" 또는 "회사"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이하 "그들") 등에게 승계되며, "고객사" 또는 "회사"는 그들로 하여금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20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고객사"와 "회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기는 "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 이용약관의 계약 조항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하였고, 본 약관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표자) _____ (인)



INNOPAY 부속 특약서 (영중소 우대 수수료)

“고객사”와 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이하 “회사”라 한다)는 기 체결한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 후 부속 특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특약서는 “회사”가 “본 계약” 상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객사”와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 “고객사”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회사”가 변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우대 수수료)

1. “고객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 따라 제 6 조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사”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이 때 연매출액 산정 등 등급 분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① “영세가맹점”(연매출 3 억원 이하)
- ② “중소 1 가맹점”(연매출 3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 ③ “중소 2 가맹점”(연매출 5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 ④ “중소 3 가맹점”(연매출 10 억원 초과 ~ 30 억원 이하)
- ⑤ “일반가맹점”(연매출 30 억원 초과)

2. “고객사”의 등급은 매 반기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여 변경된다.

3.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조 제 1 항에 의거한 “고객사”의 등급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아래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가 포함된 결제 수수료 (이하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는 카드사 등의 “결제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다. 단,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고객사”의 업종 및 판매상품, “회사”의 영업정책, “결제기관 등”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가맹점 구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	비고
영세	0.40%		부가세 별도
중소 1	1.00%		
중소 2	1.15%		
중소 3	1.45%		
일반	2.30%		

4. “고객사”의 등급은 본 조 제 2 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자동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사”의 등급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는 자동 증감되며 그에 따라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도 자동 증감된다. “고객사”의 등급 변경에 따라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자동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고객사”는 본 특약서를 체결함으로써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고객사”가 본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가맹점”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 제 3 항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본 계약”의 제 7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등) 제 1 항 및 [INNOPAY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예외 사항)

1. “고객사”가 제 2 조 1 항에 따라 “영세가맹점”, “중소 1 가맹점”, “중소 2 가맹점”, “중소 3 가맹점”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제 3 조 (책임 및 의무) 제 1 항에 따른 “고객사”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계약”의 제 13 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제 1 항에 따른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특약서의 제 2 조 제 3 항에 따른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고객사”의 업종이 카드사에서 지정한 유의업종/관리업종, 리스크 관리업종의 가맹점의 경우, 본 특약서의 제 2 조 제 3 항에 따른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사에서 지정한 유의업종/관리업종, 리스크 관리업종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한다.

3. 본 특약서의 제 2 조 제 3 항에 따른 “INNOPAY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고객사”의 경우, “본 계약”의 제 7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등) 제 1 항 및 [INNOPAY 신청서] 제 4 항 서비스 이용 조건에서 정한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4. 제 1 항에서 말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란 “고객사”의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이용자 민원이 카드사 또는 “회사”로 2 개월 연속 월 3 회 이상 접수되는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제 4 조 (계약 기간)

기 체결된 “INNOPAY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본 특약서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5 조 (기타)

본 특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고객사”와 “회사”는 “본 계약”의 내용을 따르며, “본 계약”과 본 특약서가 충돌하는 경우 본 특약서가 우선한다.

본 특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를 2부 작성하고 “회사”와 “고객사”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사” (꼭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 (인)

“회사”

[상호] 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
[사업자등록번호] 119-86-46658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10층 (가산동, IT캐슬2차)

대표이사 황 인 철 (인)

“고객사” 항목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후 인감날인 필수

1. 개인/가맹점(신용)정보활용 필수적동의서 (꼭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이하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서비스 가입, 변경 및 해지, 요금정산 등 서비스 관련 문의 등을 포함한 이용계약 관련 사항의 처리 - 청구서 등의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등 -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 시 구매상품 결제 및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 나. 고객 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공지사항의 전달, 고객 불만 및 민원처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가. "이용자"의 성명(가맹점의 경우 대표자명, 담당자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가맹점의 경우 대표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맹점의 경우 대표자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주소), 상호명,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업종 및 업태, 쇼핑몰 URL, 사업장주소, 대표번호, 팩스번호, 거래대금지급정보(결제은행, 계좌번호, 계좌명), 상품, 용역거래정보 등
 - 나.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외의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추가 정보(접속 IP/MAC Address, 쿠키, e-mail, 서비스 접속 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혹은 비정상 이용기록, 결제기록)들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관하는 정보	보존 근거	보존기간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건당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년
건당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1년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개월

[필수적 동의서] 본 서비스의 신청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며, 필수적 동의서에 동의하시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가맹점(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함에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_____ (인)

(2) 개인정보 [필수적] 제공 및 위탁

- 회사는 제휴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가 변동되는 경우 홈페이지상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고지 합니다)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카드사: 국민/비씨/롯데/삼성/NH농협/현대/신한/하나 - PG사: (주)케이에스넷/세틀뱅크	신용카드 결제 (제휴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정보(회사명,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홈페이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장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등)	정보제공일로부터 서비스 해지일 또는 이용계약 종료일까지 보유 및 이용(단,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보존)
- 금융결제원 - 은행: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새마을금고/수협/신한/신협/외환/우리/우체국/전북/제주/하나/씨티/SC제일은행 - 증권: 동양/미래에셋/삼성/신한/한투/한화	계좌이체 결제 (제휴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		
- 은행: 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씨티/대구/부산/광주/경남/우체국/하나/신한 - 쿠콘(주)/세틀뱅크	가상계좌 결제 (제휴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		
금융결제원	계좌간편결제		
국세청/주케이에스넷	현금영수증 발행		
쿠콘(주)	계좌 인증		

-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동의서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며, 사전동의 없이 동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에 고객님의 공개 동의를 구한 경우
 -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법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라. 회사와 관련하여 합병, 인수 또는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해당 합병 후 회사, 인수인 및 영업 양수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와 위탁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사전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필수적 동의서] 본 서비스의 신청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며, 필수적 동의서에 동의하시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가맹점(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_____ (인)

2. 개인/가맹점(신용)정보조회 필수적동의서 (꼭 자필로 기재바랍니다.)

(1) 개인(신용)정보 조회 필수적 동의서

전자상거래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본인인증내역을 통한 본인식별확인,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및 관련 상담 등 신용 조회 업무

- 수집 이용 할 개인(신용)정보 내용

①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출생등록지

②신용거래정보 :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신용도정보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시기등 신용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신용능력정보 : 재산,재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⑤공공정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 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사회보험, 공공요금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

⑥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관 관련한본인이 제공한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 회원탈퇴 또는 채권, 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 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 개인(신용)정보의 효력기간 : 귀하의 본 동의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 종료일까지 본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조회자(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필수적 동의서] 본 서비스의 신청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하셔야 하며, 필수적 동의서에 동의하시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가맹점(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함에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_____ (인)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월사용료 자동이체 신청서

(꼭 자필로 기재바랍니다.)

1. 수납업체 및 요금종류

수납업체명	(주) 인피니소프트	사업자등록번호	119-86-46658
대표자	황인철	수납 요금종류	소프트웨어 월사용료
사업장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10층 (가산동, IT캐슬2차)		

2. 출금이체 신청(신청고객기재)

신청인	카드이체일경우 카드주와의관계 ()		연락처	
출금금액	원 *신청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수있음 *미납금액 발생시 일시 출금함		출금일	신용카드, 계좌이체: 매월 개시일기준 *미납시 수시출금
□ 신용카드	카드사명 [유효기간]	[월 / 년]	카드주 명의자명	
	카드번호	- - - - -		
	카드주명의자 생년월일			
□ CMS (계좌이체)	출금은행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신청인과의 관계	
	예금주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휴대폰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카드사명, 유효기간, 카드주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신청인과의 관계, 예금주 휴대폰번호, 예금주의 생년월일(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CMS)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CMS)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엔컴소프트(주), 결제대행사(나이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자동이체(CMS)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예금주명, 생년월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카드주성명, 카드사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자동이체(CMS)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과 엔컴소프트(주), 결제대행사(나이스)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자동이체(CMS)서비스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
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자동이체(CMS)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작성)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INNOPAY PG 계약 서류 안내

INNOPAY 계약 진행 시 본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계약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구분	구비서류	확인[O]
개인/법인 사업자 공통 제출서류	INNOPAY 계약서 원본 2부(인감 날인 / 공동대표시 모든 대표자 인감 날인 필수) 간인/접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앞,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공동대표 모두 필요/ 법인사업자 불필요)	
	정산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개인의 경우 대표자명만 가능)	
개인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3개월이내 발급 분)	
법인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3개월이내 발급 분 / 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3개월이내 발급 분)	
공공기관	INNOPAY 계약서 원본 2부(기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식 인장으로 날인) 간인/접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인장확인서 원본 1부(INNOPAY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처리불가)	
	정산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1부	
주의사항	<p>1. INNOPAY 이용 계약서상에 상호명, INNOPAY신청서(사업자정보, 가맹점정보, 정산정보), (고객사)란에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작성 후, <u>인감증명서 상의 등록된 도장</u>으로 날인해주세요.</p> <p>2. INNOPAY 계약서의 구성은 <u>안내문을 제외하고 6장(계약서1+이용약관2+개인정보활용동의서2+자동이체신청서1)</u>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 인쇄하여 <u>간인/접인/날인 하여 2부 모두 등기발송</u> 해주세요.</p>	

계약서류 접수처

(우)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10층 (가산동, IT캐슬2차)

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 계약접수 담당자

※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분실 될 수 있습니다.

배송 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 해주시기 바라며, 미비 된 서류가 있는 경우 계약 진행이 보류 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